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7 발의연월일: 2020. 6. 15.

발 의 자:임오경·전용기·이재정

박성준・양기대・김홍걸

고용진 · 장철민 · 정청래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하는 제도인데,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에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.

하지만,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원 진학의 경우에도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 는 것이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 및 제9조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"외국인 및 대학원생"을 "대학원생을 포함하며, 외국인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"를 "자격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대학생"이란 고등교육기관	4
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	
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	
는 학생(외국인 및 대학원생	대학원생을 포함하며,
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	외국인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자격 요건) ①교육부장관이	제9조(자격 요건) ①
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	
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	
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	
가구 해당 여부, 학점, 성적 석	
차, 연령 및 신용등급 등의 <u>자</u>	<u>자격</u>
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	요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.	
② 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	<삭 제>
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	
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, 학	
점, 성적 석차, 연령 및 신용등	
급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	
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	

<u>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</u> <u>있다.</u>